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400
----------	------

2018. 2. 26  
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14번 「서울특별시 옥외  
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 
례안」 과 남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364번 같은 조  
례 일부개정조례안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 
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 
건물의 높이·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, 관광활성화를 위해 벽  
면 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, 불법유동광고  
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자를 시장으로까지 확대하여 수거보상제도  
의 효과를 높이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  
고자 함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

건물의 높이·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하고(안 제4조제4항),

-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 건물에 “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”을 포함하며(안 제11조제2항),
-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함(안 제28조제2항).

#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·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 
에 따른다.

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 
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,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 
표시할 수 있다.
  - 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
  - 나.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
  -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
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
  - 라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  
터 이상의 건물

제28조제2항 전단부 중 “구청장”을 “시장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(대안)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>제11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</p>	<p>제4조(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·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다.</p> <p>제11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,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.</p>
<p>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,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,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</p>	<p>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</p> <p>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</p> <p>나.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</p> <p>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</p>

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.

2. ~ 4. (생략)

③、④ (생략)

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)

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

라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、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·구청장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